



설치(변경)신고 미이행시

☑ 설치(변경)신고 미이행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최대20일 조업정지)되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① 설치신고 미이행

행정처분(경고)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② 변경신고 미이행

행정처분(최대 20일 조업정지)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별표36]



방지시설 변경시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은 **방지시설 교체·증설·폐쇄시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 방지시설 설치 이전(교체·증설시) 또는 폐쇄이후(폐쇄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4항, 제5항

기술지원

비산배출저감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기술지원을 신청해보세요.
현장방문을 통해 무상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 ☑ 비산배출저감 제도 안내 및 이행방법 교육
- ☑ 비산배출시설 최적 설치, 운영방안 제시
-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작성 지원
- ☑ 비산배출시설 누출 측정 지원 등



관련문의 : 한국환경공단 유해대기부

- 전화 : 032-590-3582
- 이메일 : haps@keco.or.kr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송부 또는 QR코드 접속 후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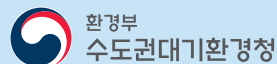


기술지원 신청

* 신청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keco.or.kr)에서 다운로드

❖ 담당 연락처 ❖

업무구분	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인·허가	수도권 대기환경청	경기도 화성	031-481-1400
		경기도 안산, 시흥, 부천	031-481-1425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평택시	031-481-1403
		경기도 그 외 지역	031-481-1399
기술지원	한국환경공단 유해대기부		032-590-3529, 3596, 3582, 3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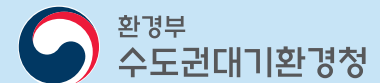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비산배출 하는 사업장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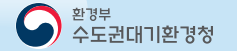


**비산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비산배출 하는 사업장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01 대상업종

☑ 39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비산배출 저감제도 대상 업종

연번	업종	업종코드	업종구분
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I 업종
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I 업종
3	합성고무 제조업	20201	I 업종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I 업종
5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I 업종
6	위험물품 보관업	52104	I 업종
7	제철업	24111	II 업종
8	제강업	24112	II 업종
9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III 업종
10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III 업종
1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24222	III 업종
12	강관 제조업	24132	III 업종
1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133	III 업종
14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III 업종
15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III 업종
16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III 업종
17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1	III 업종
18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1	III 업종
19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1	III 업종
20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22292	III 업종
21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III 업종
22	축전지 제조업	28202	III 업종
23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III 업종
24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3	III 업종
2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5	III 업종
26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III 업종
27	직물, 편조원단 및 염색 가공업	13402	III 업종
28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	III 업종
29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3	III 업종
30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5	III 업종
3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299	III 업종
32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1	III 업종
33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30391	III 업종
34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2	III 업종
35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0399	III 업종
36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30400	III 업종
37	강선 건조업	31111	IV 업종
38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4	IV 업종
39	기타 선박 건조업	31113	IV 업종

02 관리대상 물질

☑ 46개 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① 공통 적용물질 35종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9	이황화메틸
2	시안화수소	20	아닐린
3	납 및 그 화합물	21	클로로포름
4	폴리염화비페닐	22	포름알데히드
5	크롬 및 그 화합물	23	아세트알데히드
6	비스포 및 그 화합물	24	벤지딘
7	수은 및 그 화합물	25	1,3-부타디엔
8	프로필렌 옥사이드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9	염소 및 염화수소	27	에틸렌옥사이드
10	불소화물	28	디클로로메탄
11	석면	29	스티렌
12	니켈 및 그 화합물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3	염화비닐	31	1,2-디클로로에탄
14	다이옥신	32	에틸벤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34	아크릴로니트릴
17	벤젠	35	히드라진
18	사염화탄소		

※ 위 39개 대상업종에서 공통적용물질 사용하는 경우 신고대상

② 업종별 적용물질 11종

구분	업종	업종별 적용물질	
I 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2.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위험물품 보관업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타이비(MTBE),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5. 합성고무 제조업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나프탈렌	
	II 업종	1. 제철업 2. 제강업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III 업종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구분	업종	업종별 적용물질	
III 업종	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4.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5.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6.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7.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8.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1.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o-,m-,p- 포함)	
	12. 축전지 제조업 13.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14.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6.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17.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19. 강관 제조업 20.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3. 그외기타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4.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26.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7.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8.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메탄올	
	IV 업종	1. 강선 건조업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톨루엔, 자일렌(o-,m-,p- 포함)

※ I~IV 업종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물질을 사용시 신고대상

03 함유량

☑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무게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01·02·03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설치·운영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2항(별표10의 2)